

#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30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2. 10. 12.  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□ 제안이유

- 통장자녀 장학금은 통장활동에 대한 격려시책이나 일부 성적미달로 장학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, 지급기준을 완화 하여 장학금 수혜대상을 확대 운영하고자 함.

## □ 주요내용

- 가. 성적 및 예체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외에 선행, 효행, 봉사활동 등 타의 모범이 되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추가하여 장학금의 지급기준을 완화(안 제2조)
- 나. 연 1회 장학금 대상자를 선발 확정(매 학년 초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) 하므로, 선발 대상 확정 이후 2년이 되는 통장자녀는 다음 연도에 선발 대상이 되어 선발을 연 2회로(매 학기) 확대(안 제3조)

□ 일부개정조례안 : 별첨

□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□ 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□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## □ 사전예고 결과

- 입법예고 : 의견없음

\* 2012. 8. 10. ~ 2012. 8. 30. (20일)

## □ 기타 참고자료

- 「안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」 입법예고 결과보고
- 「안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」 일부개정 계획

#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통장자녀장학금(이하 “장학금”이라 한다)”를 “통장자녀장학금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 3.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추천) 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장자녀장학금(이하 “장학금”이라 한다)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기마다 선정하여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추천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3조에 따라”로 하고, “매 학년 초 학기 개시후”를 “매 학기 개시 후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예산의 범위안에서”를 “예산의 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보호자(통장)에게 계좌 입금한다.”를 “보호자(통장)의 계좌에 입금한다.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제8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8조에 따른”으로, “지급사유가”를 “지급 정지사유가”로 하고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각호의 1에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”로 하고, 제2호 중 “장학금”을 “그 밖의 장학금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제4호를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 때로 한다

제8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현금”을 “현금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자치행정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자치행정과장 김창모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자치행정계장 김제교
	담당자 성명·전화	두현은 (행정 3446)

## □ 신·구조 대비표

<p>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 할 수도 있다.</p> <p><b>제7조(장학금의 지급)</b> ①장학금의 지급은 공납금 납입기간 경과후 1개월이내에 본인 또는 <u>보호자(통장)</u>에게 계좌 입금한다.&lt;전문개정 2002.05.21&gt;</p> <p>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<u>제8조의 규정</u>에 의한 지급 사유가 없는한 <u>당해</u>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.</p> <p><b>제8조(지급의정지)</b>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보호자인 통장이 통장자격을 상실할 때&lt;개정 2001.03.16&gt;</li> <li>2. 타 기관(단체)등으로부터 <u>장학금</u>을 지급 받게 된 때&lt;개정 2002.05.21&gt;</li> <li>3. 장학생이 퇴학,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.</li> <li>4. <u>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 적이 극히 불량한 때.</u></li> <li>5.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.</li> </ol> <p>②동장은 <u>제1항의 규정</u>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<b>제9조(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)</b> ①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(이하 "특별회계"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</p> <p>②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, 보조금, 성금 및 독지가의 <u>현금</u>으로 한다.</p>	<p>..... .....</p> <p><b>제7조(장학금의 지급)</b> ①..... ..... .....<u>보호자(통장)</u>의 계좌에 입금 한다.</p> <p>②.....<u>제8조에 따른</u> .....<u>지급정지사유가</u>.....<u>해당</u>..... .....</p> <p><b>제8조(지급의정지)</b> ① ..... .....<u>각호의 어느 하나에</u>..... ..... 1. ..... .... 2. .....<u>그 밖의 장학금</u>..... .... 3. ..... .... 4. <u>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 때.</u> .... 5. ..... .... ②.....<u>제1항에 따른</u>..... ..... ....</p> <p><b>제9조(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)</b> ①..... ..... ..... ②..... .....<u>현금</u>..... ....</p>
--	--